

부산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나629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2. 2.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단946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2행부터 제3쪽 14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에 연육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E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E의 영업부장 I, 경리과장 J 등과 공모하여 총 94,6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E로부터 200,38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허위의 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배당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인 E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E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금액인 105,700,000원(= E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200,380,000원 - 세금계산서 발행액 94,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에게 2010. 12.경부터 2011. 8.경까지 합계 221,730,500원 상당의 연육을 납품하였고, E로부터 2010. 12.경부터 2012. 3.경까지 합계 195,480,000원을 지급받아 미수금 잔액은 26,250,500원(= 221,730,500원 - 195,480,000원)이었다. 이후 피고는 E의 F에 대한 채권의 배당절차에서 13,264,435원 배당받아 미수금은 최종적으로 12,986,065원(= 26,250,500원 - 13,264,435원)이 남게 되었다. 위 물품대금은 모두 피고가 E에게 실제로 연육을 납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허위거래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의 재무제표상 2010. 12. 31.자 외상매입금 명세서 및 미지급금 명세서에는 피고에 대한 기록이 없는 사실, 2011년도 거래처 원장(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에는 E가 피고로부터 2011. 3. 31. 31,680,000원, 2011. 4. 29. 20,000,000원, 2011. 5. 31. 25,000,000원, 2011. 7. 31. 6,000,000원, 2011. 8. 31. 5,460,000원, 2011. 9. 30. 6,540,000원 합계 94,680,000원의 연육 내지는 냉동수산물을 매입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E의 직원들이 E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실제보다 과다한 액수의 임금 및 퇴직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합계 1,7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퇴직금을 중복하여 수령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실, 피고가 E와 거래할 무렵 E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L의 진술서(갑 제19호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 및 그에 기한 채권가압류 결정이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원들로부터 보고받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고, 어묵생산에 필요한 연육 전량을 원고로부터 납품받고 있어서 피고가 운영하는 D로부터 연육을 따로 납품받을 상황이 아니었으며, D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8, 21, 24, 26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에 연육 등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실제 납품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식회사 M이 운영하는 부산공장에서 N로부터 수탁받아 보관하던 냉동연육 750박스(약 15톤)의 소유권이 N의 요청으로 2010. 7. 21.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피고가 2010. 7. 23.부터 9. 20.까지 각 150박스씩 전량을 출고해갔다. 또한 2010년도, 201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0년 매입금액은 총 761,451,000원(= 주식회사 O 298,902,000원 + K 주식회사 461,549,000원 + 주식회사 P 1,000,000원), 매출금액은 총 790,178,000원이고, 2011년 매입금액은 총 803,447,000원(= K 주식회사 803,447,000원), 매출금액은 총 901,614,000원임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피고는 2010. 9. 27.경부터 2011. 12. 29.까지 상당한 금액을 K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Q 명의 계좌로 꾸준하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피고가 연육납품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에 부합한다.

② E와 피고의 각 장부를 비교해 볼 때, E의 장부에 기재된 거래총액은 194,705,000원이고, 피고의 장부에 기재된 거래총액은 221,730,500원으로 27,025,500원(= 221,730,500원 - 194,705,000원)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1) E의 장부에 2011. 7. 27. 이후의 매출기록이 없어서 발생하는 차이로 보이고 그 이전까지 거래내역은 2건을 제외하고는 그 금액이 일치하는 점, (2) 피고의 장부에 기재된 내역들은 그 금액에 있어 E에 기재된 내역보다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점, (3) 피고의 장부에 기재된 거래내역에 부합하는 거래명세표들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장부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E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2010. 12.경부터 2012. 3.경까지 합계 195,480,000원¹⁾, 현물로 변제한 금액은 합계 4,900,000원(= 2011. 8. 31. 3,100,000원 + 2011. 9. 16. 1,800,000원)으로 총 200,380,000원(= 195,480,000원 + 4,900,000원)이어서, 피고의 장부에 따라 계산하면 남은 물품대금은 21,350,500원(= 221,730,500원 - 200,380,000원)이 되고, 여기서 피고가 E의 F에 대한 채권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13,264,435원을 빼더라도 8,086,065원(= 21,350,500원 - 13,264,435원)의 물품대금이 남아있게 된다.

③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배임 및 사기 혐의(피고가 E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E의 자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20. 12. 11. 피고의 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16655호).

④ 서부산세무서장은 2021. 1.경 피고에게 '2010년~2011년 귀속 D에 대한 서면확인 결과 무자료 매출 및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이 확인되어 경정하고 서면확인 종결합니다'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2010년도 및 2011년도의 매출금액과 그에 따른 과세표준액 및 산출세액이 신고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어서, 무자료 매출이나 과소신고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일 뿐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출을 늘린 것이 문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E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앞서 본 것과 같이 E 직원들이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허위 배당요구신청을 통해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을 넘어 원고 주장과 같이 E 직원들이 피고와 공모하여 허위거래를 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목명균, 판사 이순혁

1) 을 제8호증의 기재 참조(피고가 2010. 12.경 E로부터 16,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2010. 12.경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15,500,000원이 사실은 2011. 1. 6. 지급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내역들이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주장한 지급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